

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3706
------	------

2026. 6. 24.
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6년 5월 26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6년 5월 27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36회 정례회】

-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2026.6.17.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서울특별시장)

1. 제안이유

-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공립 박물관·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사무가 시·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의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사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공립 박물관·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(안 제3조의3)
- 나.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공립 박물관·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.(안 제6조제3항제3호)
- 다. 문구 정비 등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및 동 시행령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윤희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¹⁾ 및 동 시행령²⁾에서 위임하고 있는 공립 박물관·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서울특별시장에 의해 제안되었음.

1) 제12조의3(공립 박물관·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) ① 제12조의2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·미술관의 설립·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. …

2) 제7조의5(공립 박물관·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·운영 계획서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 …

나. 공립 박물관·미술관의 설립을 위한 사전 절차의 필요성

-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은 지난 2025년 1월 31일 개정을 통해,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·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위임한 바 있음.

동 개정안은 위와 같은 상위법령의 위임 취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됨.

다. 개정안의 주요 내용

(1) 상위법령의 위임사항 규정(안 제3조의3 및 제6조)

- 동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공립 박물관·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자 함.
- 안 제3조의3에서는 공립 박물관·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의 진행 시기와 접수 일자 및 평가 방식을 규정하고 있음.

진행 시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전평가 시기와 동일하게 반기별 실시로 반영하였으며, 평가 방식은 서면심사·현장실사·종합심사를 병행하여 설립타당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적절히 규정한 것으로 보여짐.

○ 안 제6조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에, 공립 박물관·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음.

공립 박물관·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는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인바, 이를 기존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원회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.

○ 동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 체계상의 이견은 없으나, 시행 과정에서 상위법의 개정 취지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가 구현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.

< 관련 신.구조문 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
제3조의2(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·시행) ① (생략)	제3조의2(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·시행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②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그밖</u> 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	4. <u>그 밖</u> ----- -----
<u><신 설></u>	<u>제3조의3(공립 박물관·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)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3에 따른 공립 박물관·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를 받기 별로 실시한다.</u>
	<u>② 시장은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」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</u>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지원경비의 관리) ①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·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 대하여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<u>시행규칙</u>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6조(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3. 4.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	<p><u>관·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을 상반기는 2월 말일까지, 하반기는 8월 말일까지 접수한다.</u></p> <p>③ <u>사전검토 및 사전평가는 서면심사, 현장실사 및 종합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.</u></p> <p>④ <u>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</u></p> <p>제5조(지원경비의 관리) ① ----- ----- ----- -- <u>같은 조례 시행규칙</u>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같은 조례 시행규칙</u>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법 제12조의3에 따른 공립 박물관·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4. 5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(2)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(안 제3조의2 및 제5조)

- 동 개정안은 제3조의2 및 제5조에서 띄어쓰기 등 어문 규정에 어긋난 부분을 광범위하게 수정하고 있음.

법제처가 발간한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은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반듯한 법령을 마련하기 위하여, <한글 맞춤법>, <표준어 규정> 및 <외래어 표기법> 등 어문 규정에 맞게 입안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.

동 개정안에는 자구 보완 사항이 다수 확인되는바, 향후 조례안 입안 과정에서 본문의 관련 기준 준수 여부를 시 법무담당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정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없음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적위원 7명, 참석위원 5명, 참석위원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70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년 5월 2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공립 박물관·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사무가 시·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의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사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공립 박물관·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.(안 제3조의3)
- 나.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공립 박물관·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.(안 제6조제3항제3호)
- 다. 문구 정비 등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
- 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- (1) 창의규제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원안동의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평가제외 대상
- (5) 규제개선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
검토의견: 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(2026. 4. 9. ~ 4. 29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문화본부 박물관과 류위남 (☎2133-4236)

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제2항제4호 중 “그밖”을 “그 밖”으로 한다.

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3(공립 박물관·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) ①

시장은 법 제12조의3에 따른 공립 박물관·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를 반기별로 실시한다.

② 시장은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」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·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을 상반기는 2월 말일까지, 하반기는 8월 말일까지 접수한다.

③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는 서면심사, 현장실사 및 종합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.

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시행규칙”을 각각 “같은 조례 시행규칙”으로

한다.

제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법 제12조의3에 따른 공립 박물관·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의2(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·시행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그밖</u>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3조의2(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·시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그 밖</u>----- -----</p> <p><u>제3조의3(공립 박물관·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)</u> ① <u>시장은 법 제12조의3에 따른 공립 박물관·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를 반기별로 실시한다.</u></p> <p>② <u>시장은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」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·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을 상반기는 2월 말일까지, 하반기는 8월 말일까지 접수한다.</u></p> <p>③ <u>사전검토 및 사전평가는 서면심사, 현장실사 및 종합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.</u></p>

<p>3.·4.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	<p><u>물관·미술관의 설립타당성</u> <u>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에 관한</u> <u>사항</u></p> <p>4.·5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의3(공립 박물관·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) 신설하여 시장이 반기별로 설립타당성을 검토·평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평가위원회 운영비, 현장실사 여비 등의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 - 상위법령인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에 따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공립 박물관·미술관 설립 타당성 평가 절차를 서울특별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선언적 규정임
 - 접수되는 신청 건수(반기별에 따라 평가 비용은 유동적으로 변동되므로 현시점에서 향후 5년간 발생할 구체적인 비용을 기술적으로 예측하고 추계하는 것은 어려움
 - 또한 평가 절차(서면심사, 현장실사, 종합심사)에 소요되는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의 비용은 기존 위원회 운영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

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박물관과 류위남(☎2133-4236)